

검단 한신더휴 어반파크 | 예비임차인 서류제출 안내문(신혼부부 특별공급)

예비임차인은 아래 표시된 예비순번에 한하여 최초 서류검수 및 추첨행사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.

※ 차순번 예비임차인은 해당추첨 이후 잔여세대(추첨 미참가 및 계약포기 세대) 발생 시 개별 연락드릴 예정입니다.

■ 서류제출 대상자 안내

구분	74C	74D(신혼부부)	74E	84D	84E
예비순번	1번 ~ 69번	1번 ~ 108번	1번 ~ 237번	1번 ~ 168번	1번 ~ 159번

■ 방문예약 및 서류제출 일정안내

구분	일정	장소
방문예약	2022.11.15(화) ~ 11.22(화)	당사 홈페이지 방문예약시스템(http://up-thehue.com/)
서류제출	2022.11.18(금) ~ 11.22(화) 10:00 ~ 16:30	당사 주택홍보관(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092-5, 창신프라자 2층)
추첨 및 계약	2022.11.25(금) ~ 11.27(일) 타입별 세부 일정 및 시간은 추후 별도 공지 예정	

※ 주택홍보관 방문 시 사전예약자에 한하여 입장이 가능하오니, 당사 홈페이지 방문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사전예약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.

■ 신혼부부 특별공급 예비임차인 구비서류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
공통서류	○		신분증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여권
	○	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• 용도 : 아파트 임대계약용 (본인발급용)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신청 불가
	○		인감도장	•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가능 (대리인 신청 불가)
	○	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•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포함하여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• 이름,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
	○		무주택 서약서	• 주택홍보관 비치
		○	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•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포함하여 발급
		○	추가 개별통지 서류	• 사업 주체에서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(개별통지)
	○		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	•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발급
		○	임신 진단서	• 태아가 소득 관련 가구원수 포함일 경우 발급 •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 (임신진단서) 제출 : 임차인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•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 (담당의사명,의료기관 등록번호, 질병코드번호, 출산예정일,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, 해당 의료기관직인이 날인된 원본서류만 인정)
	○	출산이행각서	• 주택홍보관 비치	
	○	비사업자확인각서	• 주택홍보관 비치	
혼인유형	혼인상태	○	혼인 관계 증명서(상세)	• 혼인신고일 확인서, “상세로 발급”
		○	소득 확인 서류	• 만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소득 관련 서류 발급
	혼인예정	○	결혼 확인 서류	• 서약서(주택홍보관비치),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증명 필요
		○	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• 혼인예정 배우자 기준 “상세로 발급”
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		○	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	• 등기사항 전부증명서, 건축물대장등본, 무허가건물확인서, 건축물철거결실신고서 등 • 무주택자 증명서류
		○	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되는 서류	•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
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서류 (배우자 포함)	○		인감증명서,인감도장	• 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(청약자 기준 본인발급용)
	○		위임장	• 주택홍보관 비치,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필요
	○		대리인 신분증	•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

검단 한신더휴 어반파크 | 예비임차인 서류제출 안내문(신혼부부 특별공급)

□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 서류

해당자격		소득입증 제출서류	발급처
근로자	일반근로자	•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• 재직증명서	• 해당직장 · 세무서
	신규취업자	•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• 재직증명서	• 해당직장
자영업자	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	•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• 사업자등록증	• 세무서
	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	•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)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(부분) • 사업자등록증	• 국민연금공단·세무서
	신규사업자	•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분) • 사업자등록증	• 국민연금공단·세무서
	법인사업자	• 전년도 종합사업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• 사업자등록증	• 세무서
	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	•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•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	• 해당직장·세무서
국민기초생활 수급자		• 수급자 증명서	• 행정복지센터
비정규직 근로자		• 계약 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 지급조서	• 해당직장
일용직 근로자			
무직자		• 비사업자 확인 각서 (주택홍보관 비치)	• 접수장소

※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

※ 상기 소득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※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,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- 군 복무 중이어서 건강(의료)보험증이 없는 경우 : 군복무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 복무자(직업군인 제외)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, 군 복무자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.
- 종교기관(교회, 사찰 등)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된 경우 :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
-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: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,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.
-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(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)이 있는 경우 : 전년도 1월 1일부터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.
-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: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,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.